

2015년 하반기 환경정책 주요 추진 방향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나,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승 희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자연자원과장 등 역임
tel. 044-201-6640





올해 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국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상청과 과학계에 따르면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마른장마와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밖에 작년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갈증이 커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나,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촘촘한 환경안전망, 안심하는 생활

환경부는 환경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먼저 상반기에 소독제·방충제 등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물질의 위해성평가를 거쳐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였다. 하반기부터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밀착형 화학물질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해성 분류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질 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용품이 대량 유통되는 물놀이철·성탄절 시기에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작년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14.12.31)됨에 따라, 시설 규모별 배상책임한도 금액 설정, 소송지원 대상 취약계층 범위 등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 보험상품 개발 및 피해구제 자금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16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1년간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가뭄 비상대책반을 국민안전처·해당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비상급수나 제한급수 상황에 대비하여 병입수 비축·예비급수차 확보를 하고 있으며, 가뭄 우심지역에 지방상수도가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물절약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지역별 침수피해현황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관거 정비·저류조 설치·빗물펌프 설치 등 각 지역별 필요에 맞추어 예산 우선 지원이 가능해진다.

건강한 환경, 쾌적한 삶



올해는 봄부터 녹조 발생이 심상치 않다. 환경부는 강 본류로 유입하는 영양물질(특히 인)의 양을 줄이기 위해 중점 관리 지류(18개)를 지정·관리 중이며,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녹조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류 발생 차단에 힘 쓰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녹조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배출원 집중 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유사시 댐·보·저수지 가용수량의 비상방류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조류를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한 삶을 위하여서는 각종 공해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특히 구도심지역 하수 악취개선 실증사업을 지속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악취오염원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 없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적 환경관리, 경제와의 상생 구현



환경부는 고효율 환경관리체계로 전환과 경제와의 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7월 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하반기에는 법률 제정에 대비하여 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용된 자원의 순환을 유도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또한 국회 계류중에 있다. 환경부는 하반기 법 제정에 대비하여 통일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법 또한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화관법과 화평법 또한 시행이후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화평법은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R&D 등록면제 서류 간소화·각종 등록신고절차 개선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화관법은 개별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경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입지규제 합리화 등 규제합리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가치 창출



올해 12월에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를 위한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전문가·산업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의 INDC¹⁾(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를 UN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Post-2020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후 협상과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대표적 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지속적 운영과 내실화를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저탄소 하이브리드차(CO_2 97g/km 이하) 등 저탄소차의 보급을 위한 보조와 흥보 또한 지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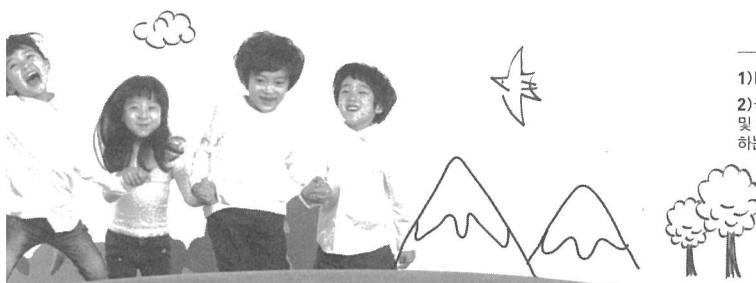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매립지 연장에 최종합의를 이루었다. 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폐기물 수송도로 환경개선 및 수송차량 밀폐화 이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도서지역까지도 확대하여 정례화 할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가구류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과잉·난개발 차단 제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²⁾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법안 통과시 후 속대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환경계획과 국토계획간 연계를 위한 공동지침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맺음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정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1)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2)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